제264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6월 17일

수석전문위원 이 한 진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19- 25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19년 6월 3일

라.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2. 제안이유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1])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 시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면규정 및 적용 유효기간(2019. 12. 31.까지) 신설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중복 감면 제한조항 신설

---

1) **제로페이(Zeropay):**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없음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없음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없음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당없음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별표1(공영주차장의 요금표)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기획예산과: 규제심사(해당 없음)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3) 가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9. 3. 29. ~ 4. 19.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강서구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조례 목록

연번	소관부서	조 례 명	감면내용
1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 용 료
2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용료, 수강료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람 료
4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 용 료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강 료
6	교육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 용 료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강 료
8	주차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요금

○ **서울특별시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료 감면)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사용료, 수강료 징수범위 및 감면기준

① (생략)

② (생략)

③ 사용료,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비율	비 고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	
	보훈단체	50%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공법단체
	장애인단체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단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10%	
수강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제시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등록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제시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20%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제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10%	

※ 감면 기준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경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9조의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⑦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4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

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강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1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비고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총 8개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확산을 위해 자치회관, 문화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등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를 2019년 말까지 감면하는 한시적인 것으로,

○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을 유도하고자 연말정산 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액 중 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혜택(최대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처 확대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면 구민들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률 증가와 사업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일괄조례개정안은 시기적으로 필요 타당한 조례로 보임.

○ 다만, 시설 사용료, 수강료, 관람료와 주차요금 감면으로 인한 구 세입감소에 따른 보전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